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63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최혁진·이수진·장종태
김우영·양문석·박선원
남인순·이성윤·정혜경
김정호·김남희·윤종오
전종덕·김 윤·박지원
김준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 등 자활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자활기업생산품 구매실적을 소속 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설립·운영하는 자활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전체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구매 증대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중앙부처에서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상황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를 각 공공기관의 자율에만 맡기고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별 자활기

업생산품에 대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우선구매 현황도 알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제출받은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2항) 중 “포함”을 “평가항목에 포함”으로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활기업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기업생산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 및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의 작성 지침에 따라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공공기관의 장은 자활기업</u> <u>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u> <u>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u> <u>매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u> <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u> <u>따른 자활기업생산품 구매계획</u> <u>및 구매실적의 작성에 관한 지</u> <u>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u> <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u> <u>따른 지침을 마련하기 전에 미</u> <u>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u> <u>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u> <u>한다.</u>
<u><신 설></u>	<u>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u> <u>따라 제출받은 구매계획과 구</u> <u>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u> <u>한다.</u>
<u><신 설></u>	<u>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구</u>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u>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⑦ ----- ----- ----- -----<u>평가항목에 포함</u>----- -----.
---	---